

의정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1181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4. 3. 28.

판 결 선 고 2024. 4. 18.

주 문

1. 가. B과 피고 사이에 2023. 4. 5.자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은 16,124,471원과 그 중 16,124,403원에 대하여 2023. 6. 28.부터 2024. 3. 28.까지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6,124,471원과 그 중 16,124,403원에 대하여 2023. 6. 28.부터 2024. 3. 28.까지는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2023. 4. 7.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23. 4. 25. 접수 제 50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0 피보전채권(갑1내지갑5)

원고는 채무자 B과 2020. 7. 10., 보증금액 950만 원, 대출은행 C은행, 2020. 10. 12., 보증금액 950만원, 대출은행 C은행, B이 신용보증에 기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B을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대위변제금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지연손해금율은 2019. 4. 1.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B은 위 신용보증에 의하여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2023. 3. 14. 이자지급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B을 대위하여 2023. 6. 28. C은행에게 대위변제하였고, 그 대위변제잔액은 16,124,403원이며, 확정손해금은 68원이다. 위 대위변제채권 또는 구상금 채권의 발생이 피고와 B 사이의 사해행위 보다 이후이지만, 피보전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성립해 있었고, 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해행위가 있었으며 그 직후 변제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하는 구상금채권 또는 대위변제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 0 사해행위(갑6내지 갑10, 다툼 없는 사실)

- B은 피고와 사이에 2023. 4. 5. 서울 도봉구 D건물 제1층 E호(이건 빌라라고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증여당시 B은 6,800만원의 C은행대출금, 2,750만 원의 F회사 사채 대출원금 채무가 있었다.

-B은 피고에게 2023. 4. 7. 증여를 원인으로 경남 함양군 G 임야 8826㎡와 H 전 3772㎡를 2023. 4.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건 빌라의 2023. 4. 5. 및 현재의 시가는 1억 3,000만 원, 위 G 임야의 2023. 4. 7. 및 현재의 시가는 22,241,520원, 위 H의 2023. 4. 7. 및 현재의 시가는 8,901,920원이다. B의 적극재산 합계액은 161,143,440원이고, B의 소극재산은 C은행과 F회사에 대한 대출금 합계 9,550만 원과 원고가 보증한 C은행 대출합계 2,000만 원, 피고가 B의 주택담보대출이자를 대납한 7,000만 원의 구상금채무, 피고가 B에게 대여한 4,200만 원의 채무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인 B이 피고에게 한 위 각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건 빌라는 부담부증여로 등기를 마쳤으나 사실은 본래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인 피고가 그 등기를 되돌린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이건 I리 부동산에 대하여도 명의신탁자인 피고 소유 명의로 정상화시킨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재산세를 납부하고 대출금을 변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건 부동산을 B에게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0 원상회복의 방법

-이건 빌라에 대한 사해행위가 있는 후 이건 빌라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가액배상에 의하여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이건 빌라의 가액은 1억 3,000만 원, 이건 빌라에 설정된 피담보채무합계액은 97,437,720원(=C은행 피담보채무 69,583,158원+F회사 피담보채무 27,854,562원, 이건 빌라에서 위 각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공제)이고, 이건 빌라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하면 32,562,280원(=1억 3,000만 원-97,437,720원)인데, 이는 원고의 채권액을 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가액배상금은 원고의 채권액이다. 따라서 B과 피고 사이에 2023. 4. 5. 이건 빌라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은 16,124,471원과 그 중 16,124,403원에 대하여 2023. 6. 28.부터 2024. 3. 28.까지는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6,124,471원과 그 중 16,124,403원에 대하여 2023. 6. 28.부터 2024. 3. 28.까지는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건 I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2023. 4. 7.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23. 4. 25. 접수 제 50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판사 오성우

별지